

2016년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2016년도 사회복지법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자격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사업과 관련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 국내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 단체의 장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단체 (정규직, 계약직 모두 포함)
- 국가 및 지자체의 경상보조금이 연간 200,000,000원 이하인 시설 및 단체
- 아동·청소년 관련 미신고시설 (가톨릭사회복지회에 등록 인준 필요)
- 독립된 기관 또는 시설 ('부설'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평화를이루는사람들'이 정하는 사업지원 신청 제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복지시설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아동·청소년 관련사업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및 관련 사회복지사업
- 차상위 계층 및 정부지원 사각지대 대상에 대하여 우선 지원

3 사업비 지원 원칙

- '평화를이루는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장은 공고된 기일 내에 본 법인이 정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수혜자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사업내용에 한하여 지원하며, 예외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합니다.
- 1년 단위 프로그램 지원 (최대 3년까지 지원 가능, 매년 재 승인)
- 사업별 최대 지원금은 일천만원(금 10,000,000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물품 지원, 일시적인 지원과 시설 보수 및 건축비용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건비(대체인력 및 계약직, 아르바이트 비용 등)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을 결정하며 사업의 시행은 반드시 승인된 사업 계획서에 준해 실시되어야 합니다.

가. 신규 세목 설립 불가.

나. 목간 예산액 전용 불가.

다. 세목간 예산액 전용 가능. (사전 승인 필요)

○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신청 금액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의 자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변경된 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학습프로그램의 경우 5,000,000원 이하에서 지원하며 일시적 학원비 지원은 불가함.

나. 설립2년 이내의 신생기관은 별도의 심사에 따라 물품 및 재정지원 등 기능보강 사업 지원 가능.

다. 전문 인력 인건비의 경우 심의 후 지원 가능.

4 심사 기준 및 과정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 내용이 공동선 향상과 인간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 사업의 필요성, 적합성, 효과성, 투명성, 인력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의합니다.

○ 1차 서류심사,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업을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심사 과정을 생략할 수 있음)

5 지원 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및 다른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 정치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1회성 행사 & 비품/장비 구입비용이 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사업

○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평화를이루는사람들'의 설립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사업

6 지원 취소 또는 환수

※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평화를이루는사람들’의 사업지원 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하고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그밖에 심의위원회가 지원취소 및 환수를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 예산 수립 시 반드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해 주십시오.

○ 지원 받은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법인이 공지한 기간 내에 첨부한 양식에 의거 사업결과보고서 및 비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종료 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 안내에 따라 반납처리 하도록 합니다.

(단, 예금이자는 신청기관의 잠수입으로 처리함)

○ 지원 받은 수행기관은 본 법인이 지원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홍보물(현수막, 리플렛, 보고서 등)에 ‘평화를이루는사람들’ 이 지원했음을 표기해야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 중간보고서 제출요구 및 기관방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8 사업 추진 기간

○ 공고 기간 별도 공지

○ 지원사업 수행 기관의 특성상 승인된 지원사업이 이미 시작한사업일 경우, 소급해서 사업비를 적용시킬 수 있음.

9 신청 및 접수 방법

○ 신청기간 : 별도 공지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안내문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E-mail 접수
(우편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공문은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E-mail 접수하며 첨부하는 스캔 자료 및 사진자료의 내용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신청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 양식과 세부사업 실행 계획서 등은 한글파일로 첨부합니다.

10 제출 서류

○ 신청공문 (스캔하여 E-mail 접수)

○ 지원사업 신청서, 세부사업 실행 계획서, 기관소개서 각1부 (E-mail 접수)

○ 사회복지기관 등록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타 시설 신고 증빙 서류 사본 1부

11 문의처

평화를이루는사람들 Tel : 02) 2258-8341~2

주소 : (우)01716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평화빌딩 15층

E-mail 주소 : peacemakers@catholic.ac.kr

홈페이지 : www.peacemakers.kr

Fax : 02) 2258-8346